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40호 2009. 1. 14(수)

규 칙

- 울산광역시남구규칙 제29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2
- 울산광역시남구규칙 제294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8

훈 령

- 울산광역시남구훈령 제13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0

[안 내 문]

- 남구 전자공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행복남구 → 남구소식 → 남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울산광역시남구 편집:기획감사실(☎ 226-5402 행정 5402)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009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29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5명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지>

[별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 령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합 계		합 계	624	425	17	44	138
		정 무 직	1	1			
		일 반 직	514	337	11	40	126
		기 능 직	107	85	6	4	12
		별 정 직	2	2			
정 무 직		구 청 장	1	1			
일 반 직	3급	계	514	337	11	40	126
		부이사관	1	1			
	4급	소 계	5	3	1	1	
		서 기 관	3	2	1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 계	38	18	2	4	14
		행 정	22	9	2		11
		의 무	3			3	
		시 설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통신	1	1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전산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간호	1			1			
6급	소 계	106	78	3	5	20	
	행 정	63	40	3	1	19	
	세 무	2	2				
	사회복지	2	2				
	전 산	1	1				
	농 업	1	1				
	녹 지	1	1				
	보 건	2	2				
	환 경	1	1				
	시 설	11	11				
	통 신	1	1				
	행정·세무	5	5				
행정·시설	6	6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일 반 직	6급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2			2	
		간호·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7급	소 계	154	106	4	12	32
		행 정	79	45	4	1	29
		세 무	9	9			
		사회복지	11	8			3
		전 산	1	1			
		공 업	2	2			
		농 업	1	1			
		녹 지	2	2			
		보 건	8	4		4	
		약 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5			5	
		환 경	3	3			
		시 설	17	17			
		통 신	1	1			
		행정·세무	5	5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2	2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수의	1	1			
	전산·통신	1	1				
	보건·별정	2	2				
	8급	소 계	154	100	1	14	39
		행 정	60	29	1		30
		세 무	19	19			
사회복지		12	3			9	
전 산		3	3				
공 업		3	3				
환 경		5	5				
녹 지		2	2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일 반 직	8급	보 건	7	5		2	
		의료기술	6			6	
		간 호	5			5	
		시 설	22	22			
		통 신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지	1	1			
		행정·공업	1	1			
		전산·통신	1			1	
	9급	소 계	56	31		4	21
		행 정	26	8			18
		세 무	3	3			
		사회복지	3				3
		보 건	3	1		2	
		시 설	9	9			
		전 산	1	1			
		통 신	1	1			
		의료기술	2			2	
		환 경	2	2			
		농 지	1	1			
행정·세무	5	5					
기 능 직	계		107	85	6	4	12
	6급	소 계	3	3			
		운 전	1	1			
		전 기	1	1			
		사무보조	1	1			
	7급	소 계	7	6		1	
		운 전	2	2			
		사무보조	3	3			
		조 무	1	1			
		보 건	1			1	
	8급	소 계	17	17			
		통 신	1	1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기 능 직		전 기	2	2			
		운 전	4	4			
		사무보조	9	9			
		조 무	1	1			
	9급	소 계	33	29	3	1	
		교 환	1	1			
		전 기	1	1			
		기 계	1	1			
		운 전	12	10	1	1	
		사무보조 통신	1	1			
		사무보조	15	13	2		
		조 무	2	2			
	10급	소 계	47	30	3	2	12
		사무보조 통신	1		1		
		교 환	1	1			
		기 계	2	2			
		운 전	21	19		2	
사무보조		18	4	2		12	
조 무		3	3				
전 기		1	1				
별 정 직	7급상당	계	2	2			
		소 계	2	2			
		비 서 요 원	1	1			
		화생방요원	1	1			

◇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을 위해 직렬의 폭을 넓혀 일부부서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코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 5급 직렬 조정
 - 시설 5급 : 2명 → 1명 (△1)
 - 행정·시설 5급 : 3명 → 4명 (증1)
- ※ 건설과 시설5급 1명을 행정·시설5급 1명으로 조정사항임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009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294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중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부서장 직렬의 폭을 넓혀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코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설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009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13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건설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령
건설과	계		27	
	일반직	소계	22	
		4급	1	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7급	7	행정2, 시설3, 환경1, 행정·공업1
		8급	7	행정1, 시설6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5	
		9급	2	사무보조2
		10급	3	기계1, 지도1, 전기1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렬의 폭을 넓혀 일부부서의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코자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서별 정원조정
 - 건 설 과 : 시설5급 Δ 1명, 행정·시설 5급 증1명
 - 시설 5급 : 1명 \rightarrow 0명(Δ 1명)
 - 행정·시설 5급 : 0명 \rightarrow 1명(증1명)